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5. 12.

외교통일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3월 18일, 김태호 의원 등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1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429회국회(정기회)

제2차 외교통일위원회(2025년 9월 16일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부

제429회국회(정기회)

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5년 11월 25일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제429회국회(정기회)

제7차 외교통일위원회(2025년 11월 28일)

상정 · 소위심사보고 · 의결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김태호 의원)

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,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계획·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(안 제4조의3제7항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김사우)

현행 「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북한이탈주민법”) 제4조의3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

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)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며,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, 그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
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인권, 복지, 사회통합 등의 복합적 요소를 포괄하므로, 그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성과에 대한 지속적 점검의 필요성이 있고, 이를 통해 계획의 체계성, 성과의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정책의 수정 및 개선의 계기가 되고, 아울러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됨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법안심사소위원장 김건)

김태호의원, 박충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은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,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.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